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116
----------	------

제출년월일 : 2005.
제 출 자 : 광 양



1. 제안이유

- 지금까지 市가 운영한 직원후생복지는 개인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시되어 환경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기에
- 광양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맞는 복지혜택을 선택(사용)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맞춤형복지제도 목적, (용어)정의

나. 적용범위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광양시 공무원
- 「광양시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한 상근인력 등
- ※ 적용배제 또는 제한 : 휴직·시보임용·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다. 복지항목

- 기본항목 : 생명·상해보험 등(의무적 적용 또는 선택)
- 자율항목 :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 (자율선택)

라.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 공통점수 :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
- 변동점수 : 근무년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여
-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만 사용(다음 연도 이월 또는 금전청구 불가)

마.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 9인이내, 위원장은 부시장, 후생복지 분야 학식과 경험자 위촉 4인

○ 심의위원회 기능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시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정 2005. 5. 26, 대통령령제18841호)

5. 예산상황

수혜대상	평균 복지점수	소요액(천원)	비고
1,017	850점(850,000원) (1점=1,000원)	864,450	광양시의회의원 및 상근인력 포함

6. 사전예고 결과

- 예고기간 : 2005. 10. 5~10. 25(20일간) 제출의견 없음
- 예고방법 : 시보 제42호(2005. 10. 5), 시 홈페이지

7. 조례규칙심의회 : 제17회(2005. 10. 26) 원안가결

8. 기타 참고사항

- 중앙행정기관 : '03년 시범, '05년부터 전면 실시(55개 기관 약 600천여명)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2004년), 경기도 김포시, 양주시, 양평군 등 2005년 실시
 - 2006년 시행예정 : 전라남도, 순천시 등 다수 자치단체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의무적 적용 또는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5.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6. “공통복지점수”라 함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광양시 소속공무원과 광양시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한 상근인력(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1조 규정에 의한 광양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에게도 필요시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양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양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시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자율항목)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

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공통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변동복지점수는 근무년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연도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등의 중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1조(광양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향만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공무원 후

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